

# 2021년 3차 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계획

## 1 용자지원 계획

- 용자규모 : 52억 원
- 대상업종 및 용자 한도액

자금구분	대상업종	신청한도	비고
시설 자금	○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, 관광펜션업 ○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	신축 15억원,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	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제외
	○ 야영장업	신·증·개보수 1억원	
	○ 관광케도업 ○ 한옥체험업 ○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주차시설	증·개보수 1억원	
운영 자금	○ 야영장업 ○ 한옥체험업	0.5억원	* '21년 1차 추가
	○ 여행업(일반·국내·국외)	2억원	
	○ 관광유람선업(일반관광유람선업·크루즈업)	3억원	* '21년 2차 추가
	○ 관광지원서비스업(관광산업특수분류) 중 “오락 및 관광체험시설” 분류업종 예) 전망탑운영, 케도운영(레크리에이션용), 도자기체험학습장, 산악오토바이체험장	2억원	* '21년 3차 추가

## ○ 신청자격

### <시설자금>

- 관광숙박업, 관광펜션업,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
- 우수 숙박시설 운영 업체
- 일반 숙박시설 중 ‘관광호스텔’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
- 관광케도업, 한옥체험업,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

### <운영자금>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, 한옥체험업, 일반여행업, 국내여행업, 해외여행업, 일반관광유람선업,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(관광산업특수분류) 중 “오락 및 관광체험시설”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

### ○ 신청요건 (시설자금)

-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(용도변경)허가를 받은 자
-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,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
- 신축의 경우,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(매입 완료)

### ○ 접수기간 : '21. 7. 19.(월) ~ 8. 13.(금)

\* 대상자 선정발표 : '21. 9. 13.(월) 시군 공문시행을 통해 개별 알림

### ○ 대출금리 : 1.0%(3개월 변동금리)

### ○ 상환조건

#### <시설자금>

- 신축(4년 거치 7년 균분상환), 증축(3년 거치 4년 균분상환), 개보수(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 \*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

#### <운영자금>

-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## ② 추진일정

- 공고 및 신청서 접수(시군) : '21. 7. 19.(월) ~ 8. 13.(화)
- 신청업체 현지 확인 : '21. 8. 16.(월) ~ 9. 3.(금)
- 기금심의위원회 개최(대상자 선정) : '21. 9. 10.(금) 예정
- 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: '21. 9. 13.(월), 시군 및 개별 통보

## 2021년 3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공고

2021년 3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일

전라남도지사

### 1. 선정규모 : 52억원

### 2. 용자일정

- 신청 및 접수기간 : 2021. 7. 19.(월) ~ 8. 13.(금)
- 선정발표 : 2021. 9. 13.(월), 시군 공문시행 및 개별 알림
- 용자기간 : 2021. 9. 13.(월) ~ 2022. 3. 11.(금), 6개월간

### 3. 용자개요

- 대상업종 및 용자 한도액

구분	대상업종	신청한도	비고
시설 자금	○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, 관광펜션업 ○ 「관광진흥법」 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체 ※ 우수 숙박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	신축 15억원,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	*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제외
	○ 야영장업	신·증·개보수 1억원	
	○ 관광케도업 ○ 한옥체험업 ○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주차시설	증·개보수 1억원	
운영 자금	○ 야영장업 ○ 한옥체험업	0.5억원	
	○ 여행업(일반·국내·국외)	2억원	
	○ 관광유람선업(일반관광유람선업·크루즈업)	3억원	
	○ 관광지원서비스업(관광산업특수분류) 중 “오락 및 관광체험시설” 분류업종 예) 전망탑 운영, 케도 운영(레크리에이션용), 도자기 체험학습장, 산악오토바이체험장	2억원	

## ○ 신청자격

### < 시설자금 >

- 관광숙박업, 관광펜션업,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
-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
- 일반 숙박시설중 '관광호스텔'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
- 관광궤도업, 한옥체험업,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

### < 운영자금 >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, 한옥체험업, 일반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외여행업, 일반관광유람선업,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(관광산업특수분류) 중 '오락 및 관광체험시설'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

## ○ 신청요건(시설자금)

-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(용도변경)허가를 받은 자
-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,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
- 신축의 경우,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(매입 완료)

## ○ 대출금리 : 1.0%(3개월 변동금리)

## ○ 상환조건

### < 시설자금 >

- 신축(4년 거치 7년 균분상환), 증축(3년 거치 4년 균분상환), 개보수(2년거치 3년 균분상환)  
※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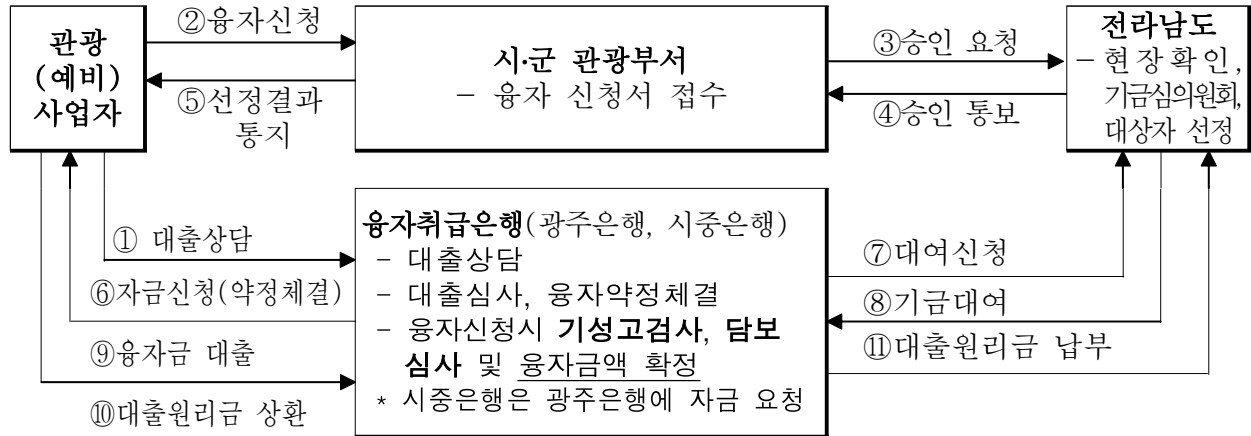
### < 운영자금 >

-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## 4. 신청서류 및 접수처

- 신청서류 : 별첨 업종별 용자세부지침 참조
- 접수처 : 시군 관광부서
-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
※ 우편 접수분은 2021. 8. 13.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
- 대출취급은행 : 6개 은행 본·지점 (광주, 기업, 농협, 하나, 한국시티, 우리)

## 5. 시행절차



## 6. 자금 신청범위(소요자금)

- **신축·증축 자금** :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 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,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
- **개보수 자금** : 「건축법시행령」 제2조의 ‘개축’, ‘재축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,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

\*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

- 다음의 경우,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 가능
  - 도색,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
  - 일반숙박업소를 관광호텔로 전환 개보수 비용
  - 200㎡이상 회의실 개보수 및 회의시설 교체비용
- 다음의 경우,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 불가
  - 부대시설 중 유흥주점,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
  -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
  - 토지매입비,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
  -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·비품 구입비용

- **운영자금** :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 (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)에 한함

※ 자산취득비용, 이자비용, 수수료(관광객 관련) 등 사용목적으로 신청 불가

## 7. 용자선정액 신청기간

- 용자선정액을 2022. 3. 11.(금)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은 소멸됨. 단,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도에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월 가능
  - 이월신청은 용자대상 사업자가 이월사유, 이월금액, 대출예정일 등을 명기하여 용자기한 내 도에 신청해야 하며, 이월 신청이 없는 경우 용자 선정 자격 자동 소멸됨

## 8. 유의사항

- 도, 시군과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체결업체 우선 지원
- 용자신청지는 업종, 공사형태(신축, 증축, 개보수), 사업장별로 개별 용자 신청
  - \* 은행이 증빙서류, 재무건전성, 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규모 등에 따라 용자 신청을 거부하거나,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.
-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 신청 불가
- 용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고 담보 관련 사항은 접수 은행과 협의 바람
- 시군별 기 용자실적에 따라 지원 가능액 변동 가능
-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용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 업종으로 등록·신고·지정 등을 마쳐야 함.
  -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
- 용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(수정 및 경정·정정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관광과로 제출하여야 함
  - 단,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용자금 집행내역(세무신고서류,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)을 1개월이내 제출
- 용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, 용자사업자가 신청은행과 변경할 은행 협의 후, 도에 용자취급은행 변경 요청
- 용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,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용자 받으시기 바람.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용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.
- 사업 선정 후 중요사항(사업자명, 사업규모) 변경시 사전 승인 추진

## 9. 용자금 회수(제재 조건)

-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.
  - 용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용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, 용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
  - 용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(신고·지정 포함)하지 않거나 용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  -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 처분(주의)을 받는 경우
  - 사후 제출서류(결산서, 세무신고서류 등)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-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용자선정을 취소하고,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용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.

## 10. 문의전화 : 전라남도 관광과(061-286-5224)

붙임 업종별 용자세부지침 1부.

# 업종별 용자세부지침



## 관광숙박업

(대상 :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 관광호텔업, 휴양 콘도미니엄업)

### □ 신축, 증축 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운영하고자, 관할시·군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「건축법」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
- 증축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

#### 2. 신청서류

- 공통 : 용자신청서, 사업계획승인사본, 건축허가서 사본, 토지대장, 대출 상담확인서(붙임1), 사업계획서(붙임2)
- 증축 : 공통 +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,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

###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(시·군청)하여야 함
- \* 관광숙박업 미등록, 호텔등급 미등급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된 용자금 회수

## □ 개보수 자금

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
  - \* 미등급 호텔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. 단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은 제외
- 다른 용도의 건물 등을 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

### 2. 신청서류

- 공통 : 융자신청서, 대출상담확인서(붙임1), 사업계획서(붙임2),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,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
- 다른 건물 등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: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, 건축허가서 사본

##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(시·군 청)하여야 함
  - \* 관광숙박업 미등록, 호텔등급 미등급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# 관광펜션업

### □ 신축, 증축 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, 관할 시장군수에게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
- 증축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

#### 2. 신청서류

- 공통 : 융자신청서, 대출상담확인서(붙임1), 사업계획서(붙임2), 건축허가서 사본, 토지대장,
- 증축 : 공통 +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

#### 3. 유의사항

- 사전에 시군 관광(건축)부서와 협의하여 관광펜션 지정(건축)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
  - \*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[2]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정받아야 함.
  - 미 지정 시,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## □ 개보수 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
-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대출상담확인서(붙임1), 사업계획서(붙임2)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

## 야영장업

### □ 신축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야영장업(일반야영장업, 자동차야영장업) 등록기준을 갖추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용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발행위허가서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\*

\*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

###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(시군)하여야 함
  - 미등록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## □ 증축·개보수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야영장업(일반야영장업, 자동차야영장업)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용자신청서, 사업계획서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개발행위허가서(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) 사본(해당사업자에 한함)

#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

### 2. 신청서류

- 용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## 관광궤도업

### □ 증축·증설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용자신청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
- 시설 매매(축조)계약서 사본

###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(시군)받아야 함
  - 미 지정 시 이미 대출된 용자금 회수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
##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용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시설허가증 사본

## 한옥체험업

### □ 증축·증설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(시군)받아야 함
  - 미지정 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
- 지정 시설의 증축·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
##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(시군)받아야 함
  - 미 지정 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

#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

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

##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주차시설

### □ 증축·증설자금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
  - 「주차장법시행령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
-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(관광부서)에서 확인 가능

### □ 시설자금(개보수)

#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,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
  - 「주차장법시행령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
#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
-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(해당 사업자에 한함)

#### 3. 유의사항

-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(관광부서)에서 확인 가능

# 일반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외여행업

#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,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

### 2. 신청서류

- 용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.

### 3. 신청한도(용자한도액)

- 2억원

# 관광유람선업

(대상 : 일반관광유람선업, 크루즈업 )

#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

### 2. 신청서류

- 용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사업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.

### 3. 신청한도(용자한도액)

- 3억원

# 관광지원서비스업

(대상 :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)

## □ 운영자금

### 1.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(관광산업특수분류) 중 “오락 및 관광체험시설”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

### 2.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
-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  - \*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.

### 3. 신청한도(융자한도액)

- 2억원

## 2021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신청서

신청일자*		신청인*	(인)
취급은행*	은행	지점	(손전화: - - )

### 1. 신청인 정보

① 사업장명*		② 업체규모*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
③ 법인명* (신청인)		④ 업체결산*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( 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⑤ 대표자명*	⑥ 사업자등록번호* (생년월일)	⑦ 법인등록번호	
⑧ 사업장주소*	( - )		
⑨ 법인주소*	( - )		
⑩ 담당자	성명 :	이메일 :	
	전화* :	팩스 :	

\*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⑪ 업체 현황*	2019년 실적	2020년 실적	2021년 계획
총 자산	( )	( )	( )
매출액	( )	( )	( )
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	영업비용 <sup>1)</sup>	( ) <sup>2)</sup>	( )
	집기.비품.차량운반구 (신청업체만 작성)		
임직원 (명)	( )	( )	( )

주1)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

주2)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, ( )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,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(%)을 표기하시기 바람.

## 2. 신청내용

- ① 신청횟수\* :  1회(처음 신청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2~4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5회 이상  
 ② 사업구분\* :  신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증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개보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운영자금  
 ③ 특이사항\* :  중소기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개인사업자  
 ④ 신청업종\* : \_\_\_\_\_ (    급)  
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: \_\_\_\_\_  
 ⑥ 관광기금 이상환잔액\* :            백만원  
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\* :            백만원(대출희망시기 : 5월)

## 3.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\*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기 투자액 ①	융자신청 자금 ②	융자신청 자금 외 소요액 ③	합 계 ①+②+③
소요 자금	지원대상 ④				
	지원대상외 ⑤				
합 계 (④+⑤) = (⑥+⑦+⑧+⑨)					
조달 계획	관광기금 ⑥				
	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⑦				
	자기 자금 ⑧				
	기타 자금 ⑨				

## 4. 담보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순번	담 보 물 건	담보가액	비 고

\* 실제 대출시 은행이 정밀 심사하니,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 요망

# 용자신청서 작성안내문

※ 용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십시오.

- 필수항목 : \*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
- 용자신청 : 사업장(1-①), 사업구분(2-②), 신청업종(2-④)별로 별도 신청
- 취급은행 : 용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용자취급은행 참조
  -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
  - 은행,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

## 1. 신청인 정보

-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
  -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
-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√ 표시
  -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- ③ 개인은 신청자명,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,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
- ④ '예'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
-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),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
-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
- ⑧ ①의 실 주소지
- ⑨ ③의 실 주소지, 용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
-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
-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(임직원: 명, 그 외: 백만원)

## 2. 신청내용

-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(중앙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)
- ②, ③ 해당 사항에 √ 표시
-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,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
  -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, 휴양콘도미니엄업, 관광펜션업, 야영장업, 관광케도업, 한옥체험업,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주차시설, 일반여행업, 국내여행업, 해외여행업, 일반관광유람선업, 크루즈업
- ⑤ 관광사업 등록증(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포함)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
-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
-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 기재

### 3. 소요자금

- 소요자금은 기금지원대상과 그 외 자금으로 구분하여 표기

### 4. 담보계획

-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
- 관광기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, 기성고검사,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
-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, 신청 후, 공사 중에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
- 담보물건은 계획시설, 부동산,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, 담보가액은 (예상) 시가를 기재함

### 5. 사업결과 증빙자료 제출

- 결산서 작성 업체는 대출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(수정 및 경정·정정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관광과로 필히 제출
  - 단,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(세무신고서류,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)을 1개월 이내 제출



(붙임 1)

# 대출상담확인서

업체명 :

대표자 :

대출가능금액 : 원

대출금리 : 연 %

위 업체는 2021년 3차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,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 (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추천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)

년 월 일

담당자 : 은행 지점 (인)

확인자 : 은행 지점장 (인)

전라남도지사 귀하

(붙임 2)

사업계획서 (신축)				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
	주소			연락처
업종			상호명	
건설장소			공사기간	
규모	지상 지하	층 층	대지면적	건축연면적
		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
			객실수, 사이트수, 주차면수	동 실
부대시설				
소요자금	억원(음자    억원, 자담    억원)			
사업의 필요성	(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)			
※ 개보수는 개보수 사유 및 내역 작성				
전라남도지사 귀하				

# 사업계획서(증축)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
	주소			연락처		
업종				상호명		
건설장소				공사기간		
규모	당초	지상 지하	층 층	대지면적	건축연면적	건물면적
			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
				객실수, 사이트수, 주차면수	동실	
	변경	지상 지하	층 층	대지면적	건축연면적	건물면적
			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
				객실수, 사이트수, 주차면수	동실	
부대시설						
소요자금		억원(융자    억원, 자담    억원)				
사업의 필요성		(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)				

전라남도지사 귀하

## 사업계획서 (개보수)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
	주소			연락처	
업종				상호명	
건설장소				공사기간	
규모		지상층 지하층	대지면적	건축연면적	건물면적
		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
			객실수, 사이트수, 주차면수	동실	
부대시설					
소요자금		억원(융자    억원, 자담    억원)			
사업의 필요성		(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)			

※ 개보수는 개보수 사유 및 내역 작성

전라남도지사 귀하

(붙임 3)

##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
업 체 명		대표자명	(인)
사업자등록번호		연 락 처	

상세내역	소요액	비고
예) 직원 급여	10,000,000 원	
예) 사무실 임차료	10,000,000 원	
예) 비품 구입(컴퓨터, 프린터, 책상 등)	5,000,000 원	
예) 홍보비(인터넷 광고료 등)	4,000,000 원	
예) 영업용 차량 구입	20,000,000 원	
예) 건물수선비(벽지 교체, 타일 수리 등)	1,000,000 원	
		원
		원
		원
		원
		원
총 계	50,000,000 원	

※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은 2021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.